

경제교육지원법: 지난 10년의 변화와 개선 방향*

박 형 준**

【요약문】 이 연구는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과정과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우선,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 배경과 제정 과정, 그리고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시 제기되었던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과정을 정리하고, 주요 개정 내용을 최초 제정 법률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또한, 현행 경제교육지원법의 구조와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주요 경제교육 사업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선 방향을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한다. 첫째, 민간의 자발적인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더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경제교육지원법에 담아야 한다. 셋째, 경제교육지원법에 경제교육 내용 요소로 명시된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최근 교육학의 흐름을 반영하여 경제교육 핵심역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경제교육지원법, 경제교육 핵심개념, 경제교육 핵심역량, 경제교육 주관기관, 경제교육 활성화

* 이 논문은 2019년 9월 18일에 국회의원 김정우(기재위 간사)와 국회의원 조승래(교육위 간사)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10년의 회고를 통한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였음을 밝힌다.

**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hjoon@sungshin.ac.kr).

I. 서론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다.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은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실천에 의미 있게 이바지하였다. 그동안 세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안 내용도 큰 폭으로 바뀌었고, 법안 개정에 따라 경제교육의 지원 양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한국경제교육협회가 지정되었으며, 한국경제교육협회는 막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법에 명시된 다양한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아하! 경제’라는 경제신문을 창간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보급하면서 학교 현장에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협력학교를 중심으로 경제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경제교육지원법에서 경제교육 내용 요소로 명시한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경제교육 교재 및 자료를 개발하였다. 한편, 전국적인 초·중·고등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학교 안 경제교육 실태 조사, 학교 밖 경제교육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경제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정기적으로 경제교육박람회를 개최하여 경제교육 기관이나 단체를 경제교육 수요자에게 널리 알리려던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경제교육을 위한 정부 재원을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급기야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한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이 취소된 이후, 한동안 경제교육이 중심을 잃고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지정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결국은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이 개정되었다. 경제교육 주관기관 폐지는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교육 실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각종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경제교육의 실행 주체가 사라지면서 경제교육의 거버넌스 구조와 경제교육의 내용과 범위도 함께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에 따라 경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대폭 감소하고, 학교 안팎 경제교육의 실행 주체와 모습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의 경제교육 재정 지원은 경제교육 교재 개발이나 경제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연수 등으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법 개정 전보다 민간의 자발적인 경제교육이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과 개정이 우리나라 경제교육 실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과정에 나타난 쟁점과 당시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 최영준(2013)의 연구가 유일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경제교육지원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 배경과 과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과정과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개정 내용이 경제교육 실행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경제교육지원법의 구조와 경제교육지원법에 나타난 주요 경제교육 사업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향후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II.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

1.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 배경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교육지원법에 나타난 제정 배경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이란 ①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 파악, ②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 등 경제교육 교육내용 수립 및 확산, ③ 경제교육 인력의 양성 등을 들 수 있다. 경제교육이 활성화되면 국민은 각자 직면한 경제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러한 선언적 의미의 제정 배경에도 불구하고, 경제교육지원법의 실질적인 제정 배경은 제정 당시 법률 제8조 4항과 제9조 4항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제화 필요성 때문이다. 국가가 경제교육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교육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교육지원법은 이런 배경으로 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미국의 경제교육지원법(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EEE)¹⁾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제8조(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④ 국가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 과정

- 2007. 6. 8. 경제교육지원법 입법 예고
- 2007. 6. 15. 재정경제부 주최 공청회 개최
- 2008. 11. 7.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 국회 제출
- 2008. 12. 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회의 개최
- 2009. 2. 6.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공포

1) 미국 정부는 청소년들의 경제·금융이해력 증진을 목표로 2004년에 제정한 경제교육지원법(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EEE)을 통해 2013년까지 청소년 경제·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경제교육지원법은 미국 경제교육 관련 기본법으로 주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교육부가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른 예산을 받아 집행하였다. 미국 정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을 경제교육 주관기관이 직접 집행하거나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경제교육 활성화를 시도하였다. 공개경쟁을 통해 미국경제교육협의회(CEE)가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총 11,639,654달러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2007년 6월 8일에 경제교육지원법이 입법 예고되었고, 2009년 2월 6일에 제정, 공포되기까지 1년 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최영준(2013)은 주요 제정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소개하였다.

2007년 6월 15일에 열린 재정경제부 주최 공청회에서는 공공재로서, 법적 지원의 필요에 따라, 시너지 효과의 대상으로서, 조직적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경제교육의 입법화를 강조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민 차원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교육 강화 추세와 OECD의 금융교육 확대 권고에 따라 경제교육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008년 12월 12일, 입법 전 국회 해당 상임위원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4명의 진술인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구체적으로, ① 경제교육지원법 내에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의 필요성과 지역경제교육협의회의 구성, 그리고 지역별 경제교육 추진을 통한 공간적 한계의 극복 등에 관한 의견, ② 세계 각국은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정부, 공공단체 등의 공공부문이 합심하여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경제교육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법 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견, ③ 학교 경제교육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④ 정부 주도형 획일적, 재화 공급자 중심, 교육 공급자 중심, 비효율적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에 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3.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시 주요 쟁점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주목받았다(최영준, 2013). 먼저 법안의 추진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교육의 활성화는 교육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쟁점은 현시점에서조차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경제교육지원법에서는 학교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과서를 검정하는 등 학교 교육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교육은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법안의

추진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경제교육지원법의 내용이 대부분 선언적 의미의 훈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적이었다. 경제교육지원법에는 ‘국가는 ……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표현이 14차례 등장한다.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나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쟁점 역시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이 입법화되면, 이에 따라 금융교육지원법안, 소비자교육지원법안, 직업교육진흥특별법안 등 경제교육에 속하는 개별 분야의 입법화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일부 반영하여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정의)에서는 경제교육을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한 개별 분야의 입법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Ⅲ.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1.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과정

- 2009. 2. 6. 제정 (법률 제9409호)
- 2011. 7. 25. 타법개정 (법률 제10898호)
- 2016. 1. 27. 일부개정 (법률 제13815호)
- 2017. 12. 26. 일부개정 (법률 제15283호)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세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 2011년 7월 25일 개정은 정부 보조금 관련 법률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12조의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또한 2017년 12월 16일 개정은 세종시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에 맞추어 제9조에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수정한 것이다.

비교적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2016년 1월 27일 개정이다. 이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와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두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2008년 12월 5일에 설립된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09년 2월 6일에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한국경제교육협회는 주요 관리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2014년 5월에 지정 취소가 되고, 이후 경제교육 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하였다. 결국 2016년 1월 27일 개정으로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조항 자체가 삭제되고, 경제교육을 위한 심의·평가 기구로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경제교육단체 간 경제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협의·조정,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2009년 2월 6일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과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2016년 1월 27일 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을 비교하고자 한다.

2. 경제교육지원법의 신·구법 비교

앞서 살펴본 대로, 경제교육지원법이 세 차례 개정되었지만, 주요 조항이 개정된 것은 2016년 1월 27일 개정이 유일하다. 처음 제정된 법률과 비교하면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 내용이 중요하다.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개정 조항 비교

법률 제9409호, 2009. 2. 6.	법률 제13815호, 2016. 1. 27.
제8조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	제8조 경제교육의 추진 제8조의2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제9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제9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제9조의2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제10조 업무의 위탁 주관기관	제10조 업무의 위탁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1) 제8조의 개정 내용

제8조의 개정 내용은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경제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경제교육에 관한 심의·평가를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08년 12월 5일에 한국경제교육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제교육지원법에 열거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경제교육 사업으로 2009년 12월부터 “아하 경제”를 창간하여 초·중고에 무료로 보급하고 경제교육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경제교육협회 주요 관리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 2014년 5월에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이 취소되었다. 이후에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다가 결국 2016년 1월 27일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해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조항이 삭제되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조건을 완화해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제8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진해야 할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경제교육 관련 사항에 관한 심의·평가를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후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법률로 정한 경제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평가하는 최고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조항에서는 “국가는(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되어 있는데, 제8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 추진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조항에서는 행위 주체를 ‘국가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선언적 의미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제8조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주체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지정하고 일정 부분 강제성을 띤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제8조의 주요 개정 내용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제8조의 주요 개정 내용 비교

법률 제9409호, 2009. 2. 6.	법률 제13815호, 2016. 1. 27.
<p>제8조(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p>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단체들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법인을 교육내용의 중립성과 구성원의 다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주관기관의 업무(생략)</p> <p>③ 주관기관의 국가에 대한 건의(생략)</p> <p>④ 국가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생략)</p>	<p>제8조(경제교육의 추진)</p> <p>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생략)</p> <p>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p>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 3.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 4.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생략) <p>② 위원회의 구성(생략)</p> <p>③ 위원의 임기(생략)</p> <p>④ 위원의 성실 의무(생략)</p> <p>⑤ 자료의 제출 요구권(생략)</p> <p>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생략)</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 개정 전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업무와 개정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개정 전 제8조 2항에서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경제교육에 관한 업무는 매우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상당 부분 업무 영역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다. 그런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업무 내용이 구체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개정 전 1호의 ‘경제교육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은 개정 후 2호의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조성’으로 구체화하였다. 위탁 범위도 개정 전에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위탁 업무를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으로 한정하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로 시행령에 명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실행 주체

가 경제교육 주관기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뀌게 되었다.

개정 전 2호의 ‘주관기관의 구성원의 상호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과 3호의 ‘주관기관의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은 개정 후 제9조의2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회를 둘 수 있다.’에 반영되었다. 개정 전후 경제교육에 관한 주요 업무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경제교육에 관한 주요 업무 비교

법률 제9409호, 2009. 2. 6. [경제교육 주관기관]	법률 제13815호, 2016. 1. 27. [기획재정부장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교육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주관기관의 구성원의 상호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관기관의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4.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u>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조성</u> 3. 그 밖에 <u>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 제9조의 개정 내용

개정 전 제9조에서는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2006년 5월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4개 지역에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2009년 2월에 강원, 제주, 충북, 경남, 전북 5개 지역에서 추가 설립되었고, 2009년 8월 충남, 전남 2개 지역, 2016년 7월 경북 1개 지역, 2017년 12월 수도권(2개 센터), 울산 2개 지역에 차례로 설립되어 현재 14개 지역에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설립되어 지역 간 경제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었는데 주관기관 지정 조항이 삭제되면서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 외에 지역경제교육센터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6년 1월 27일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제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설립과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담고 있다. 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2017년 3월 24일 당시 18개 기관과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출범하였다. 이후 2018년 11월 15일 창립총회를 거쳐 2020년 3월 현재 30개 공공기관과 경제교육 관련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개정 전 제8조 2항의 각호에 명시된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업무 중에서 2호의 ‘주관기관의 구성원의 상호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과 3호의 ‘주관기관의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개정 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업무로 이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면 제9조의2의 2항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활성화’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표 4> 제9조의 주요 개정 내용 비교

법률 제9409호, 2009. 2. 6.	법률 제13815호, 2016. 1. 27.
<p>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p>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u>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u>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②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원칙(생략)</p> <p>③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사업(생략)</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생략)</p>	<p>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p>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u>위원회</u>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하 동일)</p> <p>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p> <p>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u>경제교육단체협의회</u>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구성원의 친목 도모와 업무 협의에 한정할 수도 있고, 각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 사업의 활성화로 확대할 수도 있다.

각 구성원의 사업 중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경제교육단체 협의회 차원에서 지원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국가는 이에 필요한 경비 등 물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제9조의 주요 개정 내용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3) 제10조의 개정 내용

경제교육 주관기관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제10조 업무의 위탁 조항도 개정되었다. 개정 전 제10조에서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경제교육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행령 제8조에서는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 2항의 4호(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뿐 아니라 시행령 제3조(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경제이해력 평가 및 인증),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 및 관련 교재 개발, 경제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까지의 업무를 모두 주관기관에 ‘위탁한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 후 제10조에서는 주관기관 대신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 제8조를 살펴보면 위탁 업무의 범위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위탁 업무는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로 명시되어 있다. 앞서 말한 대로, 그 외에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경제교육 사업은 모두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제10조의 주요 개정 내용 비교와 개정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는 각각 <표 5>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제10조의 주요 개정 내용 비교

법률 제9409호, 2009. 2. 6.	법률 제13815호, 2016. 1. 27.
<p>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u>주관기관</u>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p>	<p>제10조(업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법인 또는 단체</u>에 위탁할 수 있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표 6> 개정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

대통령령 제27112호, 2016. 4. 28.
<p>제8조(업무의 위탁)</p> <p>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업무 중 <u>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u>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업무 중 <u>경제교육인력의 양성</u>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업무 중 <u>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u>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u>한국개발연구원</u>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u>한국소비자원</u>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u>대한상공회의소</u>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IV. 경제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

1. 경제교육지원법의 구조

경제교육지원법은 13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은 9개 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교육지원법과 그 시행령의 구조를 요약하면 <표 7>과 같다.

<표 7> 경제교육지원법의 구조

경제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의 임무		
제5조	경제교육의 활성화	제3조	경제교육의 활성화
제6조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제4조	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제7조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제5조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제8조	경제교육의 추진		
제8조의2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제6조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절차 등
		제6조의3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제9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제7조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9조의2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8조	업무의 위탁
제11조	실적보고서의 제출		
제11조의2	감독보고서의 제출		
제12조	지원된 예산의 반환		
제13조	지정취소 등	제9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부칙	시행일	부칙	시행일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주요 경제교육 사업

경제교육지원법에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나타나 있다. 제4조에서는 ‘충분한 경제교육 기회의 제공’,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하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 마련’,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국가의 임무로 명시한다.

구체적인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담겨 있다. 경제

교육 실태조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 및 확산, 경제교육 교재 및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제교육인력 양성,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이 경제교육지원법에 나타난 주요 경제교육 사업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주요 경제교육 사업

조	주요 경제교육 사업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교육의 현황과 국민의 경제이해력 파악 •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 도입·정착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 • 경제교육 핵심개념에 따른 사례 중심 경제교육 교재 개발 • 교육과정 등에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 반영 • 경제교육 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교육인력의 연수와 재교육 기회 제공 •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제교육인력 지원 및 원격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우수 경제교육 사례 선정·홍보 • 경제교육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 경제교육포털 구축 •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주: *표시는 위탁 업무임.

V.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선 방향

1. 경제교육 거버넌스 구조

개정 전 경제교육 거버넌스 구조는 기획재정부가 경제교육 주관기관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주관기관과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주요 경제교육 사업을 하는 구조였다. 주관기관과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듬해 예산 지원을 조정하거나 예산 반환 또는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후에는 경제교육관리위원회가 경제교육사업의 심의·평가를 담당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 실행의 주체가 되었다. 물론 일부 사업은 시행령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임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경제교육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5조에 명시된 경제교육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어야 하고, 외부 기관에 의뢰할 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된 계기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던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위법 행위로 인한 지정 취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방향에 대한 판단은 경제교육 관련자마다 다를 수 있다. 국가는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하지만 경제교육의 실행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던 한국경제교육협회의 위법 행위가 문제라면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국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거나 조직과 활동, 예산 집행을 투명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에 다시 주관기관 지정을 부활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행령을 개정하여 더 많은 경제교육 사업이 민간 경제교육단체에 위탁되거나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제9조의2에 따라 신설된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아직 그 역할과 업무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개정 전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업무 일부(제8조 2항 3호: 주관기관의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를 개정 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에 이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민간 자율로 설립된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통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경제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정비되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도 있다. 물론 국가 예산이 지원되면 그에 상응하게 투명하게 집행하였는지,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는지를 국가가 평가하고 감독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국가가 지원하기보다는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경제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학교 경제교육에 실질적인 관여(involverment)

경제교육지원법 제3조 3항, 제4조 1항, 제5조 2항에서는 국가가 학교 경제교육을 장려하고 경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6조 3항에서는 교육과정 등에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선언적인 훈시 규정일 뿐 법적 실효성이 없다.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② 국가는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③ 국가는 교육과정 등에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장원리, 합리적 선택, 노동, 금융, 경제시민의식 등 경제교육 핵심개념과 실생활 적용사례들을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국가는(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부터 개정되어야 한다. 경제교육지원법에 노력한다는 표현이 14번이나 등장하지만 노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 ‘노력’이라는 문구를 빼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고쳐 쓰고 경제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노력을 넘어서 이제는 학교 경제교육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교육지원법에는 노력의 주체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보면 노력의 주체가 대부분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명

시되어 있다. 또한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를 개정하면서 경제교육의 추진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명시하였다. 다른 조항에서도 ‘국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개정하여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학교 경제교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사실 학교 교육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사무가 아니라 교육부장관의 고유 사무이다. 이 부분은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될 때 이미 제기되었던 논쟁이기도 하다. 그러한 학교 경제교육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관여할 방안을 경제교육지원법에 담은 작업이 다음 개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 경제교육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결국 학교에서 충분한 경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경제교육 수업 시간을 확보하고, 적절한 경제교육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게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일이다.

하나의 아이디어는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를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정규 교과에서 경제교육 수업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기 때문에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는 교과 수업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학교 자유학년제(주제선택 활동), 교양 시간, 봉사 시간, 견학 프로그램, 학교 밖 캠프 참여 등 어떤 형태로 이수하든지 학생이 재학 중에 일정 시간의 경제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경제교육지원법에 담은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의 내용이 「초·중·등교육법」과 충돌하지 않게 교육부와 협의 등을 통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강제 규정으로 경제교육지원법에 담을 수 있다면 교육부장관도 기속하게 될 것이다. 만일 강제 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선언적 의미의 훈시 규정으로도 명문화하면 학교 경제교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거나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문구를 경제교육지원법에 담은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학교 경제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마련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마련된 학교 교육과정 안을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교과서 검정은 교육부장관의 사무이고, 실제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탁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검정 작업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3. 경제교육 핵심개념 vs. 경제교육 핵심역량

경제교육지원법 제6조에서는 국가가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이 적용된 교재 등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등에도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 경제교육 핵심개념의 정립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발표한 여러 차례의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업이다. 경제교육 핵심개념의 모체는 미국 경제교육협의회(CEE)에서 출판한 ‘기본 경제개념’과 ‘경제교육 내용 표준’이다(Saunders and Gilliard, 1995; Siegfried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2007 KDI 경제교육 표준」, 「2008 KDI 경제교육 표준」, 「2012 한국경제교육협회 표준 경제개념」이 개발되었다(손정식 외, 2007; 전택수 외, 2008; 오영수 외, 2012).

「2007 KDI 경제교육 표준」은 기본개념, 내용 요소, 주제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주제는 기본개념과 내용 요소의 적용에 해당하는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가 갖는 매우 독특한 연구 성과라고 볼 수 있다. 「2008 KDI 경제교육 표준」은 2007년 연구의 후속 과제로서 2007년 연구와 달리 초·중·고의 학교 급별로 나누어 표준내용, 학습지침, 성취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2012 한국경제교육협회 표준 경제개념」은 2008년 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금융 관련 내용 요소를 대폭 보강하였으며, 대상을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일반인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교육학 분야의 최근 경향은 핵심개념이 아니라 핵심역량을 강조하는 흐름이다(이광우 외, 2009; 이근호 외, 2013). 이미 2015년에 개정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큰 틀로 삼고 개정되었다. 총론 차원에서의 핵심역량²⁾뿐 아니라 교과별 핵심역량³⁾까지 개발되었으며 각 교과의 내용 요소가 핵심역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교육과정에 포함하였다. 여기서 ‘역량’이란 지식(knowledge), 기능(skills), 가치 태도(value and attitude)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교육 핵심개념이 지식 측면의 경제교육 내용이라면 경제교육 핵심역량은 이를 포함한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OECD/INFE에서도 금융교육의 목표가 금융이해력이나 금융 지식을 넘어서 금융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 2)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6대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 3) 예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교과 핵심역량은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획재정부와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을 개발하였다. 1차년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 등 경제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심층면접(FGI)을 통해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산 관리 역량, 진로 탐색 역량, 위기관리 역량, 변화 대응 역량, 노후 대비 역량을 선정하고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60개 경제교육 핵심 내용과 관련 경제개념을 추출하였다. 2차년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경제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개발한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

핵심 경제역량	의미	생애주기별 경제교육 핵심 내용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소비 (지출) 관리 역량	자신의 경제 상황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소비(지출)하며, 다양한 지불수단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4	4	2	1	
자산 관리 역량	노동 등을 통해 소득을 관리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부채와 신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5	4	6	5	4
진로 탐색 역량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여 설계하고, 자신의 적성과 비교우위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2	1		
위기 관리 역량	자신에게 닥친 위험에 대비하고,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2	1		3
변화 대응 역량	자신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정책, 법, 제도, 경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4	3
노후 대비 역량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후 대비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며,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1	1	2
합계		9	12	16	11	12

자료: 김주훈 외(2017), 149쪽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경제교육 핵심역량’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경제교육지원법에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경제교육 핵심역량’으로 용어를 대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교육 핵심역량’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비 관리 역량’이 경제교육 핵심역량에 해당한다면 ‘소비 관리 역량’의 하위 역량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지식 측면의 역량 요소, 기능 측면의 역량 요소, 가치 태도 측면의 역량 요소를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거 경제교육 핵심개념이 경제학 원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경제교육 핵심역량은 경제학 원론의 틀을 깨고 실용적인 경제교육의 내용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였다. 경제교육지원법은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미국 경제교육지원법(EEE)의 형식을 빌려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주관기관이 중심이 되어 경제교육 지원법에 명시된 각종 경제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다른 경제교육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가 계기가 되어 큰 폭으로 개정되었는데, 주관기관 지정이 폐지되고 경제교육관리위원회가 경제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최종 심의평가 기구로 경제교육 거버넌스 구조가 바뀌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된 경제교육 사업을 관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애초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경제교육 사업이 구체적인 몇 개의 사업으로 특정되었다. 어찌 보면, 민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경제교육을 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에서 국가가 경제교육을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법 개정 전후에 경제교육의 규모와 내용이 축소되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앞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 경제교육의 추진 주체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교육지원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3월에 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출범하였

다. 과거 경제교육 주관기관 수준의 위상은 아니더라도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다수의 기관과 단체가 자율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효과적인 경제교육의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고민하고 추진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출범할 때 예전 경제교육 주관기관이었던 한국경제교육협회를 떠올리며 걱정하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정부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이 실효성 있게 활성화될 방안을 경제교육지원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획재정부장관이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을 권장한다면, 학교 경제교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경제교육 총량 이수제’를 추가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될 때부터 현재까지 경제교육 핵심 개념을 경제교육의 내용 요소로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교육학의 흐름을 반영하여 경제교육 핵심역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 1990년대부터 줄기차게 발표되던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이 맺은 구체적인 결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다양한 경제교육 사업이 추진되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경제교육지원법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경제교육지원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고민은 곧 경제교육이 나아가야 할 지향과 맞닿아 있다. 경제교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이 다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주훈 · 심재학 · 이성신 · 정영호 · 이지은 · 이용수 · 남선혜 · 조선영 · 김영인 · 이강선 · 서한나(2017),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 연구: 경제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연구용역보고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 손정식 · 김경모 · 김상규 · 장경호 · 한경동(2007), 경제교육 표준 정립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
- 오영수 · 한진수 · 장경호(2012), 2012 표준 경제개념 개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경제교육협회.
- 이광우 · 전제철 · 허경철 · 홍원표 · 김문숙(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근호 · 광영순 · 이승미 · 최정순(2013),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택수 · 김진영 · 박영석 · 오영수 · 조병철(2008), 경제교육 표준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
- 최영준(2013), 경제교육지원법의 입법 과정 고찰과 개정안에 관한 연구, 경제교육연구, 20(1), 141-163.
- Saunders, P. and J. Gilliard (eds.) (1995), *A Framework for Teaching Basic Economic Concepts with Scope and Sequence Guidelines, K-12*, New York, NY: 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NCEE).
- Siegfried, J., A. Krueger, S. Collins, R. Frank, R. MacDonald, K. M. McGoldrick, J. Taylor, and G. Vredeveld (2010),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 2nd ed., New York, NY: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CEE).

<Abstract>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Changes in the Past 10 Years and Revision Directions

Hyung Joon Park*

This study reviews the revision process and major contents of the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EESA), corresponding to the 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EEE) in the United States and discusses the revision directions of the EESA for encouraging economic education. To begin with, it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enacting the EESA and what major issues were raised in the enactment of the EESA. Next, the revision process of the EESA is summarized, and major revisions are compared with the originally enacted law. Besides, it reviews the structure of the EESA and the major economic education projects specified in the EESA. Lastly, the revision directions of the EESA are discussed in three dimensions: First, the EESA should be revised in the direction of supporting the voluntary economic education of the private sector. Second, the EESA should include some regulations, such as compulsory completion of certain hours of economic education, so that more students can receive economic education at school.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nverting the core economic concepts, which is specified as the content of economic education in the EESA, into the core economic competencies by reflecting the recent trends in pedagogy.

Key words: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EESA), Core economic concepts, Core economic competencies, Host organization for economic education, Encouraging economic education

원고접수: 2020년 03월 25일 심사일: 2020년 03월 26일 ~ 2020년 04월 20일
게재확정: 2020년 04월 20일

*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hjoon@sungshin.ac.kr).